

-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제보건-

특정감사 결과보고서

2015. 6.

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	1
1. 감사 목적	1
2. 감사대상자	1
3. 감사기간 및 인원 등	1
4. 감사 중점사항	1
II. 감사결과	2
1. 총평	2
2.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	2
3. 조사내용	3
4. 감사자 의견	9
III. 처분요구 사항	10

1. 감사 목적

이번 특정감사는 가명의 제보자로부터 임직원행동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제보가 있어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진위 확인 및 부당함 해소를 목적으로 함

2. 감사대상자

- 본사 ○○○○○○ ○○직○급 ○○○

3. 감사기간 및 인원 등

- 감사기간: 2015. 5. 6.(수) ~ 2015. 5. 15.(금) / 8일간
- 감 사 반 : 감사실 국토정보직△급 □□□, 국토정보직◇급 ◎◎◎
* 국토정보직△급 □□□(2015. 5. 6. ~ 5. 8., 5. 13. ~ 5. 15._6일간)

4. 감사 중점사항

이번 감사는 ○○직○급 ○○○(이하, 피신고인이라고 함)와 “○○업체 및 ○○업체 소속 직원과의 관계와 채용 관련한 압력 행사 여부”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함.

- 동료 및 ○○업체에 원망의 대상 여부
 - 동료 간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부
 - ○○업체와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부
 - 임원을 빙자한 부적합한 언행
- 직원 가족을 ○○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넣어 취업 시킨 사실이 있는지 여부
- ○○대행사 대표와 싸움 여부
 - ○○대행사 대표와 관계

II 감사결과

1. 총평

- 제보내용에 대해 관련자 25명에게 문답 또는 질문·전화통화 등으로 조사한 결과 제보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
- 동료 및 ○○업체에 원망의 대상이나 ○○업체와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함
- 피신고인이 직원 가족을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채용하게 했다는 제보 내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○○○○○○ 신규채용 시기에 ▽▽▽ ○○반장(이하, ○○반장이라고 함)이 신규 ○○○○○○(6명) 채용을 위해 일부 ○○○○○○ 신청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채용하였음
- ○○업체 사장과 다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작년이 아닌 지난 2015. 3. 5.에 계약부서(○○○)에서 2015년도 신규 시설관리용역 낙찰업체인 (주)◇◇◇◇ ◎◎◎ 대표와 용역가격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쌍방간에 입장 차이로 인한 언쟁은 있었으나 제보내용과 같이 엄청난 싸움은 아니었음

2. 조사대상자 및 조사방법

조사대상자			조사방법	비고
소속	직급	성명		
○○○○○	○○직○급	○○○	문답	피신고인
	○급	☆☆☆		

조사대상자			조사방법	비고
소속	직급	성명		
	○급	***		
	○급	●●●		
	○이사	◎◎◎	전화질문	
(주)◇◇◇◇	현장대리인/ ○○반장	▽▽▽ 반장	문답	
	○○○○○	◆ ◆		
	○○○○○	♠♠♠	질문서	
	-	♣♣♣		
○○팀장	○○○○○	◇◇◇	구두질문	
	-	■ ■ ■		
(유)■ ■ ■	○○이사	●●●	전화질문	
	○○○○○	♣♣♣		
		●●●		
		■ ■ ■		
		□□□		
		⊖⊖⊖		
		●●●		
■■■■서비스(주)	○○			

3. 조사내용

가. 동료 및 협력업체에 원망의 대상 여부

제보 내용

- 조직의 위아래가 없고 협력업체 간에도 끊임없는 분쟁과 논쟁을 일으키고 있음
- 자기가 심어 놓은 인맥은 하늘 같이 대하고 별 볼일 없는 상대자는 손톱 밑에 때보다도 업신여기는 냉혈인간
-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매너는 완전 위선적이고 혼자 다 일하는 일꾼처럼 늘 바쁜 척 하며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몰라도 과연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

- 소속 부서 상급직원 3명(☆☆☆ , * * * , ●●●)의 문답조사와 현재 시설관리 업체 소속 ○○○○○ 8명과 안내원 1명의 질문서 답변 결과 “직·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”거나 “과업지시서대로 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”라는 의견이 있었으며
- 질문서 답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○○○○○들과의 관계는 대부분 “좋다”라고 답변하였으며 “대행업체와의 관계는 좋지 않다.”가 2명이 있었으나 “모른다.”거나 미표시 한 응답자도 있었으며 그 외 경비팀 2명의 구두답변 또한 관련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
- ○○반장의 경우 환경관리 업무 지시를 현장 대리인인 본인에게 하지 않고 일반 ○○○○○들에게 지시하여 본인에게 업무지시가 전달되게 하는 것은 본인을 무시하고 조직의 위아래를 무시한 것이며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음

질문서 답변 결과

(단위: 명)

구 분	○○○○○과 관계	협력업체와 관계
좋다	6	4
보통	1	2

좋지 않다	1	-
모름	-	1
미표시	-	1
기타	-	1

- 한편 2014년에 현 ○○반장이 ○○○○○ 2명에게 금전을 차용한 후 ○○○○○들의 고용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직전까지도 변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을 피신고인이 조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
- ○○반장이 ○○○○○들의 점심식대 1회 분을 착복하고 청소용품을 배부하지 않아 일부 ○○○○○이 사비로 구입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피신고인이 조사하여 ○○반장에게 식대비와 청소용품 비를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었음

조사 결과

- 피신고인은 본사 사옥 시설관리 ○○업체 관리·감독 실무자로서 대행업체에게 공사 입장에서 과업지시서상의 용역업무 수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보문과 같은 끊임없는 분쟁과 논쟁을 일으켰다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음
- 피신고인은 20○○년도에 ○○직으로 채용되어 누구를 심어놓거나 라인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정이 많은 직원이라는 평이며
- 피신고인 본연의 업무는 사옥의 ○○관리와 시설관리 ○○업체 업무 관리 실무자로서 사무실에 있기 보다는 공사 건물 주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항상 연락이 되고 있어 제보내용과 같은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
- 또한 업무 성격상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할 내용도 있을 것이며 바로 조치해야 할 사항의 경우 그 자리에 인접해 있는 ○○○○○에게 조치를 지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장대리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 조직의 위아래를 모르고, 위선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다소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
- 피신고인은 대부분 ○○반장에게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간혹 다른 남자 ○○○○○에게 지시한 적도 있다고 조사됨

나. 임원을 빙자한 부적합한 언행

제보 내용

- 걸핏하면 ○○님과 ○○님을 팔아대고 큰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있는 양 못된 행동을 스스럼없이 자행

- 부서 상위자(3명)의 문답과 ○○○○○(8명), 안내원(1명)에 대한 질문서 답변 결과 ○○님과 ○○님 빙자에 대해서 “들은 적이 없다.” 8명, “모른다.” 1명이 답변함

조사 결과

- 조사대상자 전원이 그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직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음

다. 직원 가족을 ○○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넣어 취업 시켰는지 여부

제보 내용

- ○○업체 ○○○ 중 직원 엄마와 누나라고 위장하여 대표에게 압력을 넣어 기존에 있던 근로자를 쫓아내고 거기에 취업시킴
- 이후 엄마도 누나도 아님이 밝혀지고 말았으나 어쩔 수 없이 현재도 고용하고 있는 실정

- 소속 부서 상급직원 3명의 문답조사 결과 전원 모르는 내용이며 현재 ○○관리 업체 소속 ○○○○○ 8명과 안내원 1명의 질문서 답변 결과 “들은 적이 있다.” (2명), “○○반장이 그랬다.” (1명)이 답변하였음

- 들은 적이 있음(2명): ○○반장에게서 들은 것으로 조사 됨

* 2명 중 1명은 쫓아낸 것이 아니라 1월 초 모집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

- ○○반장이 그랬다(1명): 피해자가 답변함

【붙임 1】 조사내용 1참조

- ○○반장이 1차 문답에서 “피신고인이 ○○반장 본인에게 ◆◆,

♠♠♠ 두 사람을 직원의 엄마와 와이프로 부탁 했었다.” 라고 답변하였으며 2차 문답에서는 2014. 12. 말경 ○○반장은 피신고인에게 1층 로비에서 “2015. 1. 2. 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해야 하니 그전에 소개하는 두 사람에게 연락해서 미리 와 보라고” 했다고 답변하며 피신고인이 소개하는 두 사람에게 연락하게 했지 ○○반장 본인은 두 사람에게 연락 한 적이 없었다고 수차례 답변함

- ○○반장이 지명한 두 사람에게 ○○반장이 전화 통화한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본 결과 12. 24. ~ 12. 31.까지 ♠♠♠ 5회, ◆◆에게 4회씩 통화한 기록이 있었음
- 그러나 ○○반장은 2차례에 걸친 문답에서 답변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3차 문답에서 전화통화 기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반복하며 “피신고인에게 부탁을 받았다.” 고 주장하여 부득이 통화기록을 근거로 한 3인(○○○ 대리, ▽▽▽ ○○반장, ◆◆ ○○ ○○○) 대면 문답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답변을 반복하며 피신고인에게 부탁 받았음을 주장하고 피신고인은 전혀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

【붙임 1】 조사내용 2참조

조사 결과

- 피신고인의 2014. 12. 20. ~ 12. 31. 까지 통화기록에서 ○○반장이 지명한 두 사람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으면 피신고인이 채용을 부탁한 것이고, 없을 경우에는 ○○반장이 직접 모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 쌍방의 동의를 받음
- 피신고인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○○반장이 지명한 두 사람에게 전화한 기록이 없었음
- 그 결과 ○○반장이 직접 연락해서 채용한 것으로 최종 인정 함

○ ○○○ ○○반장 통화 기록

(2014. 12. 기준)

통화 발신 일시	통화 대상자	통화시간	비 고
12.24. 13:21	♠♠♠	2분	
12.24. 13:24	◆ ◆	1분 34초	
12.26. 13:27	◆ ◆	36초	
12.26. 13:28	♠♠♠	46초	
12.27. 12:54	◆ ◆	33초	
12.30. 13:39	♠♠♠	32초	
12.31. 10:34	♠♠♠	49초	
12.31. 10:39	◆ ◆	44초	
12.31. 18:07	♠♠♠	48초	

* 각각 총 통화 횟수: ♠♠♠(5회), ◆ ◆(4회)

라. 용역대행사 대표와 싸움 여부

제보 내용

- 작년 연말 협력사 대표와 엄청난 싸움이 있었는데도 ☆☆☆ , ○○
○, ●●● 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현재에 이름

【붙임 1】 조사내용 3참조

조사 결과

○ 2014년 ○○업체 (유)■■■■기업 대표와 관계

계약이 1년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행기간 중 최선을 다했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신고인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으나 피신고인의 업무상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현재는 다른 감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

○ 2015년 ○○업체 (주)◇◇◇◇ 대표와 관계

소통 부재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과업지시 및 과업산출 내역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입장 차이에 따른 논쟁은 있었던

조사 결과

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업체 대표의 답변과 당시에 자리에 있던 재무처 직원들과의 답변(증언)이 상이하여 업체 대표의 대화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움

○ ○○대행사 대표와 원활한 관계를 위한 관리자들의 노력 여부

지난 4월 중순경 업체대표와 사옥 ○○○○○ 등이 모인자리에서 공사는 정부의 소외계층 및 약자보호 정책 준수 및 고용안정, 부당업무 지시 금지 등에 대한 의지 전달 등 가족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

4. 감사자 의견

- ○○○○○ ○○직○급 ○○○는 ○○업무 및 본사 ○○관리 대행업체 관리·감독 실무자로서 간혹 다른 남자 ○○○○○에게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현장대리인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현장대리인인 ○○반장은 본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
- 업체와 관계에서도 과업지시서상의 과업산출내역 및 과업 수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입장 차이에 따른 소통의 한계가 있었으나 제보문과 같은 상황은 조사되지 않음
- ○○반장은 제보문의 내용에 대부분 겪었다거나 공감한다거나 부탁 받았다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보자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하였음
- 제보문은 본사 사옥주소(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)에 “○○○”라는 이름으로 본사 직원 및 ○○업체 직원들 중에 동일한 이름이 없었으며 우편물 소인은 세종청사로 되어 있어 제보자를 확인할 수

없어 「부패행위 신고 및 범죄 고발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가명에 의한 제보로 처리함

- 가명에 의한 제보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조사자 중 ○○반장 본인이 직접 채용 부탁을 받았다고 답변하여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대면문답 및 각자의 통화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피신고인이 “직원 가족의 ○○○○○○ 채용 부탁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○○반장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한 의도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여 확인할 수 없었음.
- 조사결과 피신고인 ○○○○○○ ○○직○급 ○○○는 사무분장 상 본사 사육 ○○관리 대행업체 관리·감독 실무자로서 제보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결과 제보내용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별도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으며 제보자가 가명인 관계로 **결과 통보 없이 종결** 하고자 함

Ⅲ

처분요구 사항

- 처분요구 없음